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9-23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6누37364 등록면허세 경정거부처분 취소

원고, 피항소인 재단법인 A

[redacted]

피고, 항소인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
[redacted]

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. 1. 29. 선고 2015구합75237 판결

변 론 종 결 2016. 11. 3.

판 결 선 고 2016. 11. 24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9-23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5. 7. 2.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결 론

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정형식

판사 김복형

판사 남양우